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
CONSUS ASSET MANAGEMENT CO.,LTD.

우)140-8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, KDB생명타워 18층 /전화(02)2077-5042/전송(02)2077-5069/담당:컴플 부장 이재범

문서번호 : 칸서스 컴플 제2014 – 20 호 2014.10.20

수 신 : 금융감독원장

참 조 :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총괄팀

제 목 : 경영사항공시 – 소송 등의 판결· 결정 (1심 판결)

1.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2014년 10월 16일 당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결과에 대해 아래 붙임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.

붙 임 소송 등의 판결· 결정의 건 (협회 규정 양식) 1부
판결문 사본 1부 끝.

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
대표이사 김 영 재

소송 등의 판결·결정(1심 판결)

1. 사건의 명칭	손해배상(기)
2. 원고 · 신청인	김경희 외 17명 · 법무법인 한누리
3. 판결 · 결정내용	판결 : 원고 일부 승, 피고들(자산운용사, 판매회사)은 잠정손해액(5,260,144,941원)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(1,052,028,988) 및 2013.11.2 부터 2014.10.16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자 원고들에게 지급하라. 결정내용: 소송비용 중 3/4은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. 피고가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.
4. 판결 · 결정사유	판결 : 원고 일부 승, 피고들은 잠정손해액(5,260,144,941원)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(1,052,028,988) 및 2013.11.2 부터 2014.10.16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자 원고들에게 지급하라. 결정사유: 칸서스자산운용은 이 사건 토지사유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(우즈벡키스탄)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리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이 중도에 무산되는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산운용회사로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
5. 관할법원	서울중앙지방법원
6. 판결 · 결정일자	2014년 10월16일
7. 확인일자	2014년 10월 17일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